

중앙위원회의 안건

■ 의결사항

○ 제1호 안건 :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구분	개정 前	개정 後	비고
지방 조직 운영 규정	제14조【선출기준】 지방본부집행위원의 선출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조합원수 3,000인 미만 : 7인 이내 2. 조합원수 3,000인 이상 : 10인 이내	제14조【선출기준】 지방본부집행위원의 선출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조합원수 3,000인 미만 : 9인 이내 2. 조합원수 3,000인 이상 : 12인 이내	조문 개정
	제24조【구성】 지방본부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지방본부 위원장 1인 2. 지방본부 부서장 5인 3. 지방본부 회계감사위원 3인	제24조【구성】 지방본부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지방본부 위원장 1인 2. 지방본부 부서장 7인 3. 지방본부 회계감사위원 3인	조문 개정
	제28조【지방본부 부서】 지방본부에는 다음과 같은 국을 둔다. 1. 사무국 2. 조직국 3. 정책국 4. 홍보국 5. 여성국	제28조【지방본부 부서】 지방본부에는 다음과 같은 국을 둔다. 1. 사무국 2. 조직국 3. 정책국 4. 홍보국 5. 조사통계국 6. 여성국 7. 대외협력국	조문 개정
		부 칙(2020. 8. 25)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2021.1.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본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구분	개정 前	개정 後	비고
선거 관리 규정	<p>제 7 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p> <p>① 선거관리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p> <p>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7 명 이상 ~ 11 명 이내</p> <p>2. 지방본부선거관리위원회 : 5 명 이상 ~ 7 명 이내</p> <p>3. 지부선거관리위원회 : 2 명 이상 ~ 7 명 이내</p> <p>② 위 1 항에도 불구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의 원활한 운영이 필요한 경우, 기존 절차에 의거 추가적으로 선관위원을 위촉할수 있다.</p>	<p>제 7 조【선거관리위원회】</p> <p>①선거관리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급 선거관리 위원회를 둔다.</p> <p>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7 명 이상 ~ 11 명 이내</p> <p>2. 지방본부선거관리위원회 : 5 명 이상 ~ 9 명 이내</p> <p>3. 지부선거관리위원회 : 2 명 이상 ~ 7 명 이내</p> <p>② 위 1 항에도 불구하고 각급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사무의 원활한 운영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선거관리위원을 둘 수 있다.</p>	조문 개정
	<p>제 47 조【이의신청의 처리】</p> <p>⑤ 이의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 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26 조 ②항, ⑤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사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p>	<p>제 47 조【이의신청의 처리】</p> <p>⑤ 이의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 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26 조 ②항과 ⑤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사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p>	조문 개정
		<p>부 칙(2020. 08. 25)</p> <p>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2021.1.1일 부터 시행한다.</p> <p>단, 통합되는 지방본부는 통과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p> <p>제 2 조【준용】본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p>	